나 피부 질환

59 조선소 도장작업자에서 발생한 광알레르기성 접촉피부염

|--|

1 개 요

근로자 ○○○은 2004년 8월 강선건조·수리업체인 □사업장에 입사하여 선박 페인트도장 업무를 수행하였다. 3개월 후인 10월경부터 얼굴과 목, 양팔에 피부 발진이 발생하여 개인 피부과 의원을 방문하였고 알레르기성 접촉 피부염을 진단받았다. 2007년경부터는 광과민 반응이 나타났고 그 후 여러 병원을 방문하며 지속적으로 치료하였음에도 악화와 호전이 반복되었다. 2012년 11월에 △병원 피부과에서 화학물질에 의한 알레르기성 피부염과 광알레르기성 접촉피부염을 진단받았으며, 2012년 12월 퇴사하였다.

2 작업환경

근로자는 31세인 2004년에 □사업장에 입사하여, 2005년 1월까지 도료, 경화제, 신나를 혼합하고 도료용기에 주입하는 도장 보조공으로 근무하였고(6개월), 2009년 2월까지는(4년) 스프레이 도장을 직접 수행하였다. 그 이후부터 2012년 12월 퇴사하기까지 작업지시 및 감독 등을 하는 반장직을 수행하였다(4년).

사업장에서 도장 공정에 사용하는 화학물질은 에폭시 주제 42종, 경화제 25종, 신나 16종, 기타 페인트 20종으로 피부과민성 물질인 에폭시수지와 아민화합물이 각각 도료 주제와 경화제에 1% 이상 함유되어 있었다. 한편 작업의 70%는 옥외에서 수행되어 자외선에 노출된 것으로 판단되었다.

3 해부학적 분류

- 피부질환

4 유해인자

- 화학적 요인 (유기용제)

5 의학적 소견

입사 3개월 후부터 얼굴과 목, 양팔에 피부 발진이 발생하여 개인 피부과 의원을 방문하였고 알레르기성 접촉 피부염을 진단받았다. 2007년경부터는 직사광선을 쬐면 노출 부위에 두드러기가 발생하는 광과민 반응이 나타났고 그 후 여러 병원을 방문하며 지속적으로 치료하였음에도 악화와 호전이 반복되자 2012년 12월 퇴사하였다.

2012년 11월에 △병원 피부과를 방문하여 화학물질에 의한 알레르기성 피부염과 광알 레르기성 접촉피부염을 진단받았다. 첩포 검사는 시중에 나와 있는 표준항원 시리즈로 2013년 9월에 시행하여 결과는 에폭시레진에 양성 반응을 보였다.

6 고찰 및 결론

도장공정에서 피부과민성 물질인 에폭시 수지와 아민화합물에 노출되었고 도료의 사용량을 고려하였을 때 피부과민성 물질의 노출량이 높았을 것으로 추정한다. 작업의 70%는 옥외에서 수행되는 점을 감안하면 자외선에 노출된 것으로 확인된다. 근로자의 상병은 업무관련성이 높다고 판단한다. 끝.